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부족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둔 가운데 학교시설의 사용 내용과 사용자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현행 감면 대상은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인데, 이를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로 하고, 주민의 범위에 “학교 또는 직장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 을 포함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